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22 선고 2020나69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22 선고 2020나69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2 선고 2018가단42253 판결

전 문

원고,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(담당변호사 유인상)

피고,항소인 1. C 주식회사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

변론 종결 2020. 6. 24

판결선 고 2020. 7. 22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가단42253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,040,816원 및 그중 281,705,424원에 대하여 2018.7. 1. 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2019 . 5. 31. 까지 연15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저ET심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·추가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,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"2017. 1. 11.경"을 "2018. 1. 31.경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"한다)"를 "한다r로 고치고,제4행의 "이행보증보험" 앞 에,,상법 제659조 및"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"있으므로" 다음에 "(피고 D은 'H에게 활성탄 시험결 과를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성탄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'는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 고,H도 *피고 D 등의 부탁을 받고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줌으로써 피고 D 등의 사기범 행을 용이하게 하였다'는 사기방조죄로

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)”를 추 가한다.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강화석판사 정철민판사 마은혁